

의정부지방법원 2021. 6. 3 선고 2020나205388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피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피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민석

변 론 종 결 2021. 4. 22.

판 결 선 고 2021. 6. 3.

제1 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0. 4. 2. 선고 2020가단102419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청구취지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1 부동산 중 6,343/14,608 지분에 관하여 2016. 6. 14.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2 부동산에 관하여 2016. 6. 15. 체결된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1 부동산 중 6,343/14,608지분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철원등기소 2016. 6. 14. 접수 제7130호로 마친, 별지 목록 기재 2 부동산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2016. 6. 17. 접수 제69123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B의 의료법 위반행위 및 원고의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 등

1)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라 설립된 국민건강보험의 보험자로,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관리, 건강보험료 등의 부과 및 징수, 부담이득의 결정과 징수, 요양기관이 정당하게
청구한 요양급여비용 지급 등 국민건강보험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특수공법인(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1))이다.

2) B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등이 아니어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음에도, 2012. 6. 8.경 경기도
오산시 I에서 ‘E요양병원’을 개설등록하고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을 고용하여 2013. 8.경까지
환자를 진료하도록 한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원고로부터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752,241,880원을 지급받았다.

3) 원고는 2016. 8.경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등에 따라 E요양병원과 관련하여 지급한
요양급여비용 중 합계 971,215,140원2) 을 환수하기로 결정(이하 ‘이 사건 환수결정’이라 한다)하고
2016. 9. 12.경 B에게 위 요양급여비용 환수예정 사실을 통보하였다.4) B은 2016. 7. 28.경 위와
같이 의료법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았다는 의료법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7. 1.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의정부지방법원 2016고합329), 2017. 1.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B의 피고에 대한 재산 처분행위

B은 자신의 아들인 피고에게, 2016. 6. 14. 별지 목록 기재 ① 부동산 중 6,343/14,608지분을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2016. 6. 15. 별지 목록 기재 ② 부동산을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6. 6. 17.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위 각 부동산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위 각 증여를 ‘이 사건 각 증여’라 한다).

다. B의 재산상태 등

이 사건 각 증여계약 당시 B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제외하고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였으며, 이 사건 각 증여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2016년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가액 합계는 6,843,460원(= 2,727,490원 + 4,115,970원)이다³⁾.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를 따로 표시하지 아니하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향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향변 요지

원고는 B이 매년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를 산정함에 있어 필요한 B의 재산내역을 파악하고 있었으므로, 처분행위로 문제되는 이 사건 각 증여가 있던 2016. 6. 14.경부터 3년이 훨씬 경과한 후인 2020. 1. 22.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관련 법리

1)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그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말한다. 이때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6다272311 판결).

2)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체납자의 재산 처분에 관한 등기·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다른 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할 때 이로써 국가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5다24770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국민건강보험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특수공법인인 원고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다. 판단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사해행위로 문제되는 이 사건 각 증거가 있던 2016. 6. 14.경부터 1년이 훨씬 지난 2020. 1. 22. 제기된 사실은 역수상 명백하나, 위 법리를 고려하여,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건강보험료의 부과징수를 위해 보험료 부과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유관기관으로부터 전 국민의 과세자료를 확보하고 있고, 그 과세자료 가운데에는 B의 보유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포함되어 있을 것이나, 원고가 보험료 부과를 위하여 위와 같은 자료를 수집하여 원고의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요양급여비용 환수업무를 담당하는 원고의 직원이 구체적인

재산처분행위의 존재와 B의 사해의사를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원고가 보관하고 있는 B의 과세자료를 통해서는 특정 시점에 B이 보유한 재산 내역만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을 통한 B의 재산처분행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2016. 6. 14.경을 전후로 한 B의 재산 내역을 비교 검토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이 사건 환수결정을 한 2016. 8.경에는 이미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이 사건 각 부동산이 B의 보유 재산으로 표시되지 않는 상태였을 것이므로, 원고가 과거의 여러 시점을 기준으로 B의 보유 재산을 비교 검토하여 재산 변동 내역을 확인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의 체결 사실을 파악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요양급여비용 환수업무를 담당하는 원고의 직원이 이 사건 환수결정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처분 사실을 모두 알면서도 법적 조치를 미를 별다른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1년 이전에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의 체결 사실 및 B의 사해 의사를 모두 알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 체결된 2016. 6. 14.경 원고가 B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실체를 가진 요양급여비용 971,215,140원에 관한 환수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의 B에 대한 위 채권은 이 사건 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앞서 본 인정 사실에 의하면, B이 자신의 아들인 피고에게 사실상 유일한 적극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원고 등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인 B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피고의 선의항변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성인이 된 이후 분가하여 부친인 B와 왕래 없이 지내왔고, B이 피고의 둘째 아이가 태어난 이후 피고에게 연락하여 손녀들을 위하여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을 체결한 것이며, 피고는 B의 범죄행위도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2) 판단

살피건대, 피고는 B의 친아들로서 이 사건 각 증여계약 당시 거주용도나 사업상 필요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었던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의 둘째 자녀가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일에 인접한 2016. 5. 6.경 태어났다는 등의 사정이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악의 추정을 반복하기 부족하고, 달리 피고의 선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라.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B 사이에 2016. 6. 14. 및 2016. 6. 15. 체결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심준보, 판사 박창우, 판사 김한철

목 록

1. 강원 철원군 C 임야 14,608㎡
2. 제주 D 임야 1,653㎡. 끝.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2호 나목

2) (= 445,397,520원 + 381,620,250원 + 144,197,370원), 갑 제7호증 참조

3)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까지도 B의 무자력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격에 대한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